

축산물

99.10
 축산물등급제는
 생산자에게는 사양지표!
 유통업자에게는 판매지표!
 소비자에게는 구매지표!

●비매품 등록 제37호 ●발행일: '99년9월15일 ●발행처: 축산물등급관리소 ●주소: 137-1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7-7 ●전화: 021574-2541 FAX: 021574-2544
 http://www.apgs.co.kr E-mail: master@apgs.co.kr

한우

'99.8월 등급판정결과 한우 1등급 출현율이 19.9%로 나타나 지난 7월보다 1.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1등급 출현율의 증가는 소값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고급육 소비가 늘어나 생산자들이 사육 기간을 늘리는 등 고급육생산에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돼지의 A등급 출현율도 31.9%로 나타나 지난 7월의 31.5%보다는 0.4%가 증가 되었으며, 상위등급인 A·B등급의 출현율도 64%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0.9%가 증가되어 돼지의 고급육 출현율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등급제 관련 축산법 시행...

농림부는 축산법이 지난 1.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축산물등급제 관련 축산법시행규칙을 지난 9월7일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 중 축산물등급제 관련 주요내용은

- ▶ 소·도체의 등급판정방법은 냉도체 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 ▶ 등급판정 제의 대상 축산물과 제의 절차들 정하였으며
-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 ▶ 시·도지사가 도축장의 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축장의 영업장지 처분 기준을 정하고
- ▶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절차 등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은 '99.10.1부터 시행되며 등급판정수수료는 2001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다. (관련기사 8면 참조)

농림부는 지난 9월7일 축산물등급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간 시행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 거래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 ▶ 등급판정 제의 대상 축산물에 대한 확인 등 처리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 ▶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등급판정사 배치를 요청하던 것을 등급판정소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시·도지사의 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등 규정의 고시 내용 중 축산법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고,
- ▶ 경기 경남지역의 돼지도체 등급거래 시행을 당초 2000.1.1 시행하려던 것을 유보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8면 참조)

소 등급판정 실시이후 한우 최고가 1만3천3백69원으로 경락

전북 장수축협(조합장 장재영)에서 지난 8월12일 축협 서울공판장으로 출하한 소가 지육kg당 1만3천3백69원으로 경락되어 소등급판정 실시이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최고가를 기록한 거세우는 A1 등급으로 생체중 620kg, 도체중 377kg으로 경락가가 5백4만원이었다. 산지가격으로 보면 kg당 8천1백29원으로 출하당일 산지가격인 5천3백16원보다 무려 kg당 2천8백13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소 자문위원회 개최

본소는 지난 8월 26일 본소 회의실에서 농림부 축산물 유통과 조규담과장의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등급판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등급거래규정 중 등급판정 제의 대상 축산물에 대한 확인 및 처리절차 등을 새로이 정하는 것과 축산물등급판정 기준 중 등급판정소의 요령으로 되어있는 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소·도체는 육량지수 산출항목과 육질등급 판정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소·도체중이 100kg 미만일 때만 등위로 하던 것을 150kg으로 상향, 결함내역의 표시를 보다 알기 쉽게(예: 근출혈기 → 하, 수종 나 → 자) 하는 것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돼지도체의 경우는 수돼지(비거세돈)에 대하여 현재 1개등급에서 2개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왜소한 도체의 기준을 40kg으로 명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본소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소 냉도체등급판정제 실시와 관련하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8개지부의 900여명의 주부들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소비자 교육은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소 냉도체 등급판정제의 사전홍보와 축육의 구분 판매제 등 최근의 유행하는 구입요령 등의 교육으로 육류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축산물등급제의 확실한 이미지 전달을 위해 한우고기 1, 3 등급 비교 시식회도 병행 개최 하였다.

전국한우협회 창립총회(설립추진위원장 강성원)가 지난 9월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김성훈 농림부장관, 한우사육농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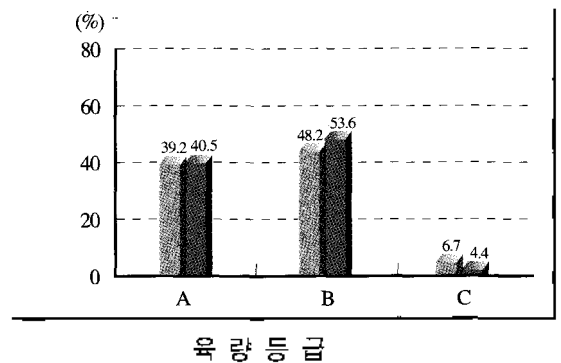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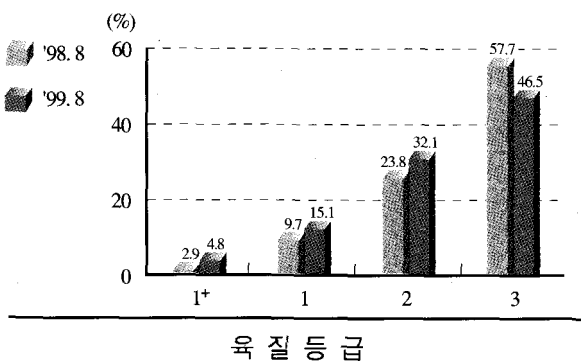
전국한우협회 초대회장은 이규석 대구광광상장우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이규석 회장은 짧은시간안에 조직을 정비하여 2001년1월 수입자유화에 대비 지도·홍보사업을 강화하는 등 한우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일당은 '축산물등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한우고기 유통 체제를 조속히 확립하라.'는 내용 등의 대정부에 건의문도 발표하였다. 한편, 본소에서는 이 행사에서 '99.10.1부터 실시되는 소 냉도체 등급판정관련 팸플렛을 배포하여 홍보사업을 전격하였다.

소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 8월)

'99년 8월의 등급판정두수는 89,041두였으며, 그중 한우는 72,841두(81.8%)였다. 한우도체의 육질1+등급 출현율은 4.8%, 1등급 출현율은 15.1%, 2등급은 32.1%, 3등급은 46.5%로써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년동기보다 7.3%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육량A등급은 40.5%, B등급은 53.6%, C등급은 4.4%가 출현되어 전년 동기보다 A등급 출현율이 1.3% 포인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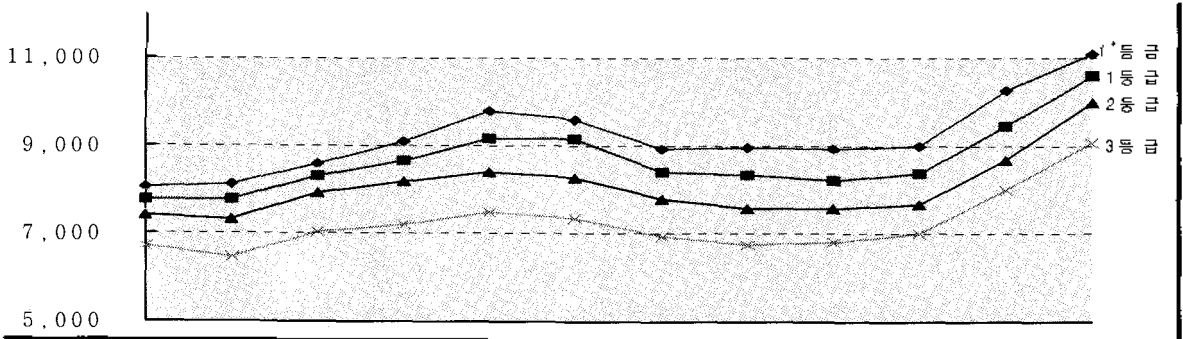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의 한우도체 '99.8월 평균 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1,273원이 오른 10,091원이었고 육질 1+등급 평균가격(B등급기준)은 11,068원, 1등급은 10,573원, 2등급은 9,959원, 3등급은 9,059원으로서 전월대비하여 1+등급은 797원, 1등급은 1,130원, 2등급은 1,276원, 3등급은 1,083원씩 각각 올랐다.

1. 한우 등급별 출현율(전국)



2. 한우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서울공판장)

(단위 : 원/kg)



등급	'98. 9	10월	11월	12월	'99.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8,053	8,118	8,570	9,089	9,780	9,581	8,929	8,974	8,934	9,004	10,271	11,068
1	7,747	7,741	8,286	8,644	9,140	9,152	8,389	8,338	8,201	8,362	9,443	10,573
2	7,407	7,298	7,899	8,155	8,387	8,261	7,783	7,556	7,580	7,667	8,683	9,959
3	6,706	6,461	7,037	7,196	7,482	7,350	6,920	6,738	6,812	6,996	7,976	9,059
등 외	5,065	5,050	5,605	5,533	6,184	5,407	5,112	4,542	4,632	5,161	6,292	6,450
평균	7,158	6,949	7,532	7,877	8,257	8,116	7,587	7,496	7,431	7,629	8,818	10,091

주) B등급 기준임.

3. 도매시장별 한우 경락가격('99년 8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평균	A1 ⁺	A1	A2	A3	B1 ⁺	B1	B2	B3	C1 ⁺	C1	C2	C3	등외
서울축공 (서울)	암	9,672	11,413	10,712	10,017	9,242	10,888	10,443	9,794	8,995	10,073	9,736	9,337	8,287	6,585
	수	9,621	11,494	10,985	10,526	9,624	-	10,700	10,209	9,049	-	-	8,822	7,162	4,977
	거세	10,832	11,811	11,069	10,700	9,935	11,211	10,760	10,394	9,588	10,291	9,764	9,235	8,895	6,288
태강산업 (서울)	암	9,195	10,444	10,049	9,587	-	10,162	9,795	9,312	8,574	-	9,176	7,725	-	4,125
	수	9,383	-	10,619	10,037	9,280	-	10,844	9,794	9,017	-	-	-	-	2,352
	거세	10,584	11,114	10,732	9,929	-	-	10,733	10,711	-	-	-	8,500	-	-
동원산업 (부산)	암	9,670	11,278	10,686	10,186	9,216	11,080	10,487	9,757	8,894	9,950	9,647	8,819	7,880	5,471
	수	-	-	-	-	-	-	-	-	-	-	-	-	-	-
	거세	-	-	-	-	-	-	-	-	-	-	-	-	-	-
태강산업 (김해)	암	9,741	11,250	10,451	10,107	9,246	10,986	10,341	9,909	8,952	10,475	9,270	8,731	8,021	4,830
	수	7,280	-	-	-	7,373	-	-	7,000	-	-	-	-	-	-
	거세	8,768	-	9,420	8,530	-	-	-	8,560	-	-	-	-	-	-
신흥산업 (대구)	암	6,450	-	-	-	8,750	-	-	-	-	-	-	-	3,000	3,000
	수	10,440	-	11,885	11,604	10,263	-	-	11,027	9,665	-	-	-	6,500	-
	거세	11,193	11,670	11,733	11,268	10,053	-	-	11,780	-	-	-	-	-	-
삼성식품 (안천)	암	7,550	-	-	9,389	-	10,100	9,565	9,088	8,597	9,999	-	8,897	6,321	4,374
	수	8,006	-	-	-	9,498	-	-	10,521	-	-	-	-	-	4,000
	거세	-	-	-	-	-	-	-	-	-	-	-	-	-	-
대양식품 (대전)	암	8,554	9,719	9,025	8,324	7,329	9,606	9,084	8,395	7,361	9,180	8,406	8,023	6,730	5,420
	수	7,790	9,060	8,957	8,170	7,590	-	9,030	7,843	7,648	-	-	-	-	-
	거세	10,544	-	-	-	9,820	11,060	-	10,680	-	-	10,100	-	-	-
축협고령 (고령)	암	4,680	-	-	-	-	-	-	-	-	-	-	-	-	4,680
	수	10,358	-	12,089	11,504	10,270	-	-	11,374	10,082	-	-	9,299	7,300	-
	거세	11,330	12,289	12,019	11,543	10,778	12,252	11,724	11,225	10,263	11,010	10,444	9,967	6,100	-
김해축공 (김해)	암	9,788	11,256	10,496	10,205	9,383	10,883	10,284	9,941	9,005	10,252	9,668	9,190	8,168	5,992
	수	8,751	-	-	9,500	9,463	-	-	-	8,034	-	-	-	-	-
	거세	10,374	-	-	-	-	10,755	10,480	9,835	-	-	-	-	-	-
제주축공 (제주)	암	8,539	-	-	9,990	8,700	10,165	9,010	8,773	7,752	-	-	7,525	-	4,500
	수	9,126	-	9,500	9,849	8,880	11,490	-	8,213	8,173	-	-	-	-	-
	거세	10,268	-	11,690	-	-	10,930	9,573	-	-	-	-	-	-	-

주) 1. 평균 경락가격은 등급별 출현두수가 고려되었음.

2. 신흥산업(대구) 거세 A1+ 4두, A1 3두 출현하였음.

(신흥산업, 축협고령은 부산불(머리,족,꼬리)이 포함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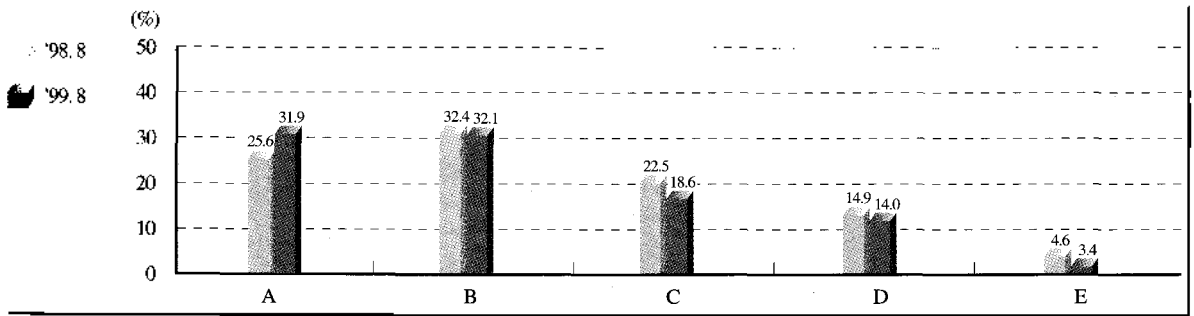
3. 제주축협 수소 A1 1두, A2 14두 출현하였음.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99년 8월)

'99년 8월의 등급판정두수는 829,421두로 이중 A등급은 31.9%, B등급은 32.1%, C등급은 18.6%, D등급은 14.0%, E등급은 3.4%의 출현율을 보였으며, 상위등급(A,B등급) 출현율이 전년동기 대비 A등급은 6.3%포인트 증가하였고, B등급은 0.3%포인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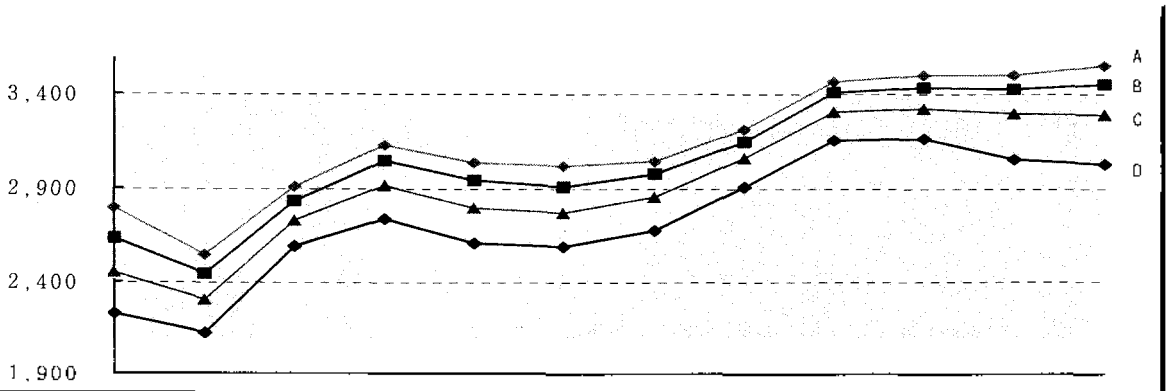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과 돼지도체 평균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5원 상승한 3,135원이었고, 암돼지(100% 기준)의 A등급 출현율은 34.3%, B등급은 27.6%, C등급은 12.7%, D등급은 9.4%, E등급은 15.7%이었으며 암돼지 A등급 경락가격은 3,554원, B등급은 3,455원, C등급은 3,287원, D등급은 3,025원, E등급은 1,821원으로 A등급과 D등급 간에는 529원의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1. 등급별 출현율(전국)



2.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암돼지, 서울공판장)

(단위 : 원/kg)



등 급	'98. 9	10월	11월	12월	'99.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	2,793	2,545	2,903	3,132	3,033	3,016	3,045	3,211	3,470	3,509	3,509	3,554
B	2,631	2,439	2,828	3,040	2,936	2,907	2,973	3,149	3,407	3,434	3,427	3,455
C	2,449	2,305	2,728	2,910	2,794	2,765	2,856	3,055	3,306	3,324	3,296	3,287
D	2,227	2,123	2,590	2,730	2,606	2,583	2,676	2,902	3,150	3,160	3,053	3,025
E	1,534	1,584	1,786	1,934	1,970	1,977	1,963	2,079	2,255	2,192	1,874	1,821
평 균	2,420	2,309	2,691	2,888	2,796	2,783	2,829	2,991	3,229	3,236	3,186	3,170

3. 도매시장별 돼지 경락가격('99년 8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 별	등 급 별 경 락 가 격					
		평 균	A	B	C	D	E
서울축공 (서울)	암	3,170	3,554	3,455	3,287	3,025	1,821
	수	2,860		3,226	3,106	2,763	1,858
	거세	3,180	3,300	3,236	3,135	2,873	2,018
태강산업 (서울)	암	3,179	3,431	3,343	3,275	3,177	1,912
	수	2,936	-	3,144	3,034	2,897	2,004
	거세	3,079	3,208	3,111	2,989	2,814	2,559
동원산업 (부산)	암	3,106	3,565	3,473	3,372	3,175	1,891
	수	2,961	-	3,219	3,195	3,010	1,736
	거세	3,161	3,253	3,186	3,085	2,928	2,590
태강산업 (김해)	암	2,952	3,593	3,489	3,189	2,814	1,859
	수	2,814	-	3,105	3,079	2,874	1,722
	거세	3,066	3,278	3,124	2,931	2,684	1,681
신흥산업 (대구)	암	2,756	3,539	3,423	3,266	2,943	1,797
	수	2,885	-	3,163	3,127	3,015	1,625
	거세	3,068	3,191	3,087	2,977	2,737	-
삼성식품 (인천)	암	3,247	3,507	3,415	3,260	3,089	1,882
	수	2,779		3,170	3,015	2,831	1,885
	거세	3,009	3,238	3,115	2,932	2,726	2,234
삼호축산 (광주)	암	3,097	3,502	3,469	3,370	3,144	1,840
	수	2,717		3,144	3,067	2,820	1,738
	거세	3,112	3,186	3,157	3,079	2,833	1,981
대양식품 (대전)	암	3,521	3,602	3,549	3,482	3,321	1,746
	수	2,906	-	3,072	2,961	2,843	1,928
	거세	3,131	3,186	3,156	3,124	2,947	-
축협고령 (고령)	암	3,045	3,242	3,115	2,954	2,774	1,824
	수	2,918	-	3,005	2,977	2,820	1,617
	거세	2,859	3,008	2,960	2,890	2,661	1,723
김해축공 (김해)	암	3,086	3,523	3,429	3,189	2,886	1,845
	수	2,693	-	3,128	3,024	2,711	1,651
	거세	3,089	3,253	3,175	2,971	2,654	1,880
제주축공 (제주)	암	3,267	3,544	3,398	3,126	2,794	2,322
	수	2,823	-	2,949	2,863	2,682	2,327
	거세	2,978	3,354	3,191	2,959	2,691	1,430

주) 1. 돼지 경락가격은 박피도체 경락가격 기준임.

2. 축협고령 및 제주축공 경락가격은 탕박도체 경락가격임.

10월 1일 소도체 냉장등급 전면실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축산물등급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돼지산업의 중요한 지표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92년 7월 축협 서울공판장에서 소 도체에 대한 냉장등급판정 실시 이전에는 식육판매업소에서 냉장쇠고기의 판매는 거의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도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증체(增體)위주의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식육판매업소에서 냉장된 고기를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품질에 따른 거래 가격차이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량과 사양기술의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2001년에 쇠고기수입자유화가 되더라도 우리 한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관행을 짧은 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더욱 어렵다.

소 냉장도체등급제 추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일부 도축장의 냉장시설이 취약하고 식육판매업소가 쇠고기를 도축하여 냉장하지 않고 곧바로 발육, 성형하여 판매하는 관행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급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96.11.부터 도축장의 냉장시설이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당일 등급판정을 일부지방에 한하여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실시한 당일등급판정이 오히려 지역간, 업소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정확한 등급판정이 되지 못해 등급을 이용한 거래지표의 혼란이 와 농가소득에 손실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소 도체의 냉장등급판정은 쇠고기 수입개방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쇠고기의 유통도 소비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시장은 쇠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의 책임 일부는 유통업자가 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떠한 쇠고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고기, 냉장숙성된 고기,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표시가 된 고기를 원하고 있다.

도축장에서의 도체냉장은 등급판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도축 후 냉장은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각종 미생물의 번식을 최대한 억제하여 소비자에게 해가없도록 하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도축 후 냉장은 상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도축장법에 냉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축장의 냉장시설 낙후, 식육운송차량의 문제점, 식육판매업소의 냉장판매시설 미흡 등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경제규모가 세계10대 강국에 근접할 만큼 커지고,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국내 쇠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냉장등급판정은 꼭 필요하다. 축산기업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일등급판정방법 개발은 고기의 냉장유통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으며 고기의 질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상태에서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외국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축산기업조합에서 지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등급판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논리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점들이 있다. 그 몇가지를 살펴보면 등급제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등급별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는 필요하나 식육판매업소에서 생산자에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육판매업소는 소를 산지에서 샀지만 내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고기로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품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산지(産地)구입시 등급별 정산방법 등을 이용해 합리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축당일 출고금지로 인한 신선육(新鮮肉)판매에 저해된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않다. 고기에서 신선육이란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숙성이 잘된 냉장고기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선육을 마치 도축되어 얼마되지 않은 고기로 정의하는 것은 고기의 사후변화과정 및 품미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쫓소 노폐우까지 하루 예냉시킴으로서 육질손상 및 냉장으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국가적 손실이 된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는 점이다.

도체의 냉장이 등급보다는 위생적 차원에서 보다 더 중요함은 앞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노폐우는 냉장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노폐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햄버그 패티, 조미료용 등 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노폐우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축즉시 냉장 또는 냉동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폐우의 냉장은 등급을 떠나 필요하다고 본다.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냉장등급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냉장되지 않은 고기를 이용한 육회 등을 먹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급판정신청자가 신청서에 절취부위(우둔, 앞다리에 한함)를 기재 하여 신청하면 등급판정전에 요청한 부위의 절취가 가능하다.

끝으로 쇠고기의 냉장등급판정은 소비자, 유통업자, 생산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쇠고기 수입개방에도 우리의 민족과 함께 살아온 한우는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육으로 해외에 수출되어 한국의 특산품으로 자리잡을수 있을 것이다. (끝)

축산법시행규칙 및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중 축산물등급제 관련 주요 내용 '99.9.7

- 소도체의 등급판정방법은 냉도체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시기는 '99.10.1로 함
 - 다만,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온도체 판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 등급판정 제외대상 축산물과 제외 절차를 정함
 - 학술연구용, 자가소비용, 마배규, 제수용
 - 소도체의 앞다리, 우둔부위(등급판정전에 신청에 의해 절취)
- 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함
 - 등급판정신청 대상 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의 표시등 자료제출
 - 등급판정대상 도체의 2등분 및 소도체의 경우 등심심부온도를 5℃이하로 냉각처리하고, 등급판정부위 절개등
- 시·도지사가 도축장의 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범위를 정함
 -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 여부 등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축장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을 정함
 -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반출 : 영업정지 5~30일
 -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기피 : 경고~영업정지 30일
- 등급판정수수료 징수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징수시기는 2001.1.1부터 징수하도록 함

●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주요내용 '99.9

- 등급판정제의 대상축산물에 대한 확인등 처리절차를 새로이 정함
 - 학술연구용은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마배규용·제수용은 도축감사신청서를 확인토록 함
 - 등급판정전에 절취하는 부위는 쇠고기 부위별 분할 및 정형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판정사 입회하여 도축장관계자가 절취하도록 함
- 신규 등급판정사 배치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던 것을 등급판정소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종전의 고시(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내용중 축산법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함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시·도지사의 등급판정업무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사항
- 2000.1.1부터 시행키로 한 경기·경남지역의 44개시·군(경기 27, 경남 17)의 돼지도체 등급거래지역은 등급판정사의 인력운용과 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등급거래지역에서 제외